

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			
제출인	상호(대표자) 전주비전대학교				사업자등록번호		
	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35				(전화번호: 010-9439-7960)		
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	건물명 비전관				위치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35		
	연면적(㎡) 5,798.61㎡				작업기간 2021-12-28~2022-01-12		
	석면건축자재[길이(m)·면적(㎡)·부피(㎡)] 71.36㎡ (필요시 별지 첨부)						
측정 기관	대표자 구 지 연				사업자등록번호 617-86-10498		
	주 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215, 2층						
	측정자/분석자 측정자 : 김경섭, 이종신				분석자 : 구지연, 김미경		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 장비 (종류/수량)	유량 (ℓ/분)	측정 일시	측정 결과 (f/cc)	검출석면의 종류
	별지첨부						
측정 지점	비산측정 시작 사진		비산측정 종료 사진		비고		
	별지첨부		별지첨부				
	측정 시작 시간		측정 종료 시간				

「석면안전관리법」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.

2022년 01월 일

제출인(발주처)

전주비전대학교(서명 또는 인)

전주시장

귀하

첨부서류	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서 사본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■ 석면비산 측정 결과표

구분	지점	지점수	시료측정위치	비고
작업종	부지경계선	4개 이상	부지경계선 높이 1.2-1.5m	-
	위생설비 입구	전수(1개이상)	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	-
	작업장 주변	실내	1개이상	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
		실외	1개이상	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
	음압기	전수(1개이상)	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	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
	폐기물 반출구	전수(1개이상)	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, 높이 1.2-1.5m	-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
	폐기물보관지점	전수(2개이상)	폐기물 보관소 주변, 1m이내, 높이 1.2-1.5m	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
	거주자 주거지역	2개소 이상	해체/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~3m, 높이 1.2-1.5m	-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

<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분석번호	AR.NO.20220104					분석 일시	2022. 01. 04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장비 (종류/수량)	유량 (ℓ/분)	측정일시	측정 결과 (f/cc)	검출석면의 종류
	A - 1	부지경계선1	SARA5100 / 1	10.2	22. 01. 04	0.0022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A - 2	부지경계선2	SARA5100 / 1	10.5	22. 01. 04	-	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
	A - 3	부지경계선3	SARA5100 / 1	10.4	22. 01. 04	-	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
	A - 4	부지경계선4	SARA5100 / 1	10.2	22. 01. 04	0.0018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A - 5	위생설비입구	SARA5100 / 1	10.3	22. 01. 04	0.0030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A - 6	작업장주변	SARA5100 / 1	10.4	22. 01. 04	0.0024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A - 7	음압기배출구	SARA5100 / 1	10.5	22. 01. 04	0.0023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A - 8	폐기물반출구	SARA5100 / 1	10.3	22. 01. 04	0.0030	백석면 (기준치미만)
분석 연구원		구 지 연, 김 미 경					

※ 참 고

-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(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)에 따라 1m³당 0.01개 이하를 말한다. (공기 중 농도 기준 : 0.01개/cm³ 이하)
- 본 연구원의 허가 없이 사용 및 재발행 될 수 없음.
-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.
- 검출한계 <0.002/cm³ "<"는 검출한계를 뜻함.

(주)하늘석면기술연구원

